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 개발전략기획팀을 폐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 간 사무를 조정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확대·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간 정원을 상호 재배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6.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0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 주택임대차기획팀 · 주거복지정책과 · 청년주거정책과 · 주거복지지원과 · 공공주택정책과 · 민간임대정책과 · 토지정책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산업과”를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운영과 · 주택임대차기획팀 · 주거복지정책과 · 청년주거정책과 · 주거복지지원과 · 민간임대정책과 · 토지정책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산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공급과장”을 “주택건설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6호 중 “농어촌”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주거복지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제8조제14항제8호 중 “청년 · 신혼부부”를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 · 발전

제8조제15항제8호 중 “공공”을 “매입임대”로, “사항(연금형 매입임대 사

업을 포함한다)”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설 개선”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삭제한다.

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13. 영구·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제도 운영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건설현장준법감시팀·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를”을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공정건설지원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지하안전팀을”로 하고, 제9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1항(중전의 제8항)제7호(중전의 제6호)부터 제10호(중전의 제9호)까지 중 “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를 각각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을 “지하안전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을 “공정건설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을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3.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지반침하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8.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3항제11호 중 “지정기준”을 “관련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에 제23호의2 및 제2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23의2.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의3.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전문교육기관”을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6호를 삭제한다.

16.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4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8호 중 “전문교육기관”을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한다.

5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56조제4항 중 “6급”을 “6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장·단기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의 유형·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공급 관련 연구·개발
 11. 주택공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택공급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택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공택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발굴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구지정 전까지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사항

⑤ 공공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지구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공공주택 하자에 관한 사항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3.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착·준공, 입주 등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14.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9.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관리
10.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3.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공공정비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공공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5. 역세권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6. 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8. 조합점검·조합임원 교육 등 조합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및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의 지정 관련 협의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5의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의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관
할 구역란 중 “전경삼각선”을 “전경삼각선, 목포보성선, 보성연결선”으
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020”을 “1,029”로, 일반직 계 “1,010”을 “1,019”로, 서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60”으로,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6”을 “18”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7”을 “21”로, 행정주사 “90”을 “91”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1”을 “1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25”를 “1,034”로, 일반직 계 “1,015”를 “1,024”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60”으로,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1”을 “23”으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8”을 “22”로, 행정주사 “79”를 “80”으로,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33”을 각각 “1,34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을 “18”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6”으로, 행정주사 “35”를 “40”으로 하고, 시설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를 신설한다.

별표 9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33”을 각각 “1,34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을 “1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7”로, 행정주사 “35”를 “40”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를 신설한다.

별표 12 중 과학기술서기관 “2”를 “4”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1”로 한다.

별표 12의2 중 과학기술서기관 “2”를 “4”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2”를 “1”로 한다.

별표 20 중 1. 제6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디지털도로팀”을 “디지털도로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33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청년정책총괄팀장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청년정책총괄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하안전팀 신설에 관한 사항, 제9조제13항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하안전팀장이 건설정책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하안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건설안전과장이 보좌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3제2항, 제60조의4제2항 및 제60조의5 제11항 관련)

1.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시설사무관·철도경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3
시설주사·전산주사·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3
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특정직 계	1
경정	1

2. 광역급행철도기획과(존속기한: 2027년 11월 25일)

총계	5
----	---

일반직 계	5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1
3. 주택공급추진본부(준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52
일반직 계	5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5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 안전사무관	20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철도경찰주사·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0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3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토지실) ①·②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u>제20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u>제16호</u>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주택토지실에 <u>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기획팀·주거복지정책과·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토지정책과·부동산투자제도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산업과</u> 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u>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건설운영과·주택임대차기획팀·주거복지정책과·청년주거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민간임대정책과·토지정책과·부동산투자제도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산업과</u> ----- ----- ----- ----- ----- -----.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u>주택건설공급과</u> 장은 다음 사	⑩ <u>주택건설운영과</u> 장-----

항을 분장한다.

1. · 2. 삭 제

3. ~ 21. (생 략)

⑪ 주택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
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
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

-----.

3. ~ 21. (현행과 같음)

<삭 제>

<u>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2. <u>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13. <u>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14. <u>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u> 15. <u>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u> 16. <u>역세권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u> 17. <u>주택재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u> 18. <u>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19. <u>삭제</u> ⑫ (생략)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 16. <u>농어촌 주택 개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설></u>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장애인</u> ----- ----- 17. <u>주거복지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u> ⑭ -----
---	--

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
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

9. ~ 11. (생략)

<신설>

⑮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다)

9. 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
한 사항

10. · 11. (생략)

12.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발전

<신설>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8.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9. ~ 11. (현행과 같음)

12.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연구·발전

⑮ -----
-----.

1. ~ 7. (현행과 같음)

8. 매입임대 -----
사항

9. -----
----- 시설의 유지 보
수 및 관리-----

10. ·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13. 영구·국민임대주택 표준임
대료 제도 운영 및 고시에 관
한 사항

<삭제>

1.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 · 개선
3.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영구 · 국민 · 행복 주택 등) 공급기준 및 입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청년 ·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공공주택 공급 방식 다각화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장기 공공임대주택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및

대기자 제도 관련 사항

⑰ ~ ⑳ (생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 · 건설산업과 · 해외건설정책과 · 해외건설지원과 · 해외도시개발 전략지원팀 · 건설현장준법감시팀 · 기술정책과 · 기술혁신과 · 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⑥ (생략)

⑦ (생략)

⑧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6.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 오

⑰ ~ ⑳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건설정책과 · 건설산업과 · 공정건설지원과 · 해외건설정책과 · 해외건설지원과 · 기술정책과 · 기술혁신과 · 건설안전과 · 시설안전과 및 지하안전팀을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⑪ -----
-----.

1. ~ 5. (현행과 같음)

6. 해외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동 · 아시아 · 중남미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8. 중동 · 아시아 · 중남미 · 아프

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
체 설치 및 운영

8.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 오
세아니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
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
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
항

9.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 오
세아니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
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0. 삭 제

11. ~ 15. (생 략)

⑨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 국가별 해외 도시개발
사업 전략 수립 · 시행 및 사
업 발굴 · 지원

2. 아시아(중동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국가
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3.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
체 설치 및 운영

4. 아시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
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
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

리카 · 오세아니아---

9. 중동 · 아시아 · 중남미 · 아프
리카 · 오세아니아---

10. 중동 · 아시아 · 중남미 · 아
프리카 · 오세아니아---

11.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항

5. 아시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⑩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⑪ · ⑫ (생략)

⑬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 시행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 · 개정 및 운용

23.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 · 개발

2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5.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26.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⑦ 공정건설지원과장-----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 -----

4. ~ 6. (현행과 같음)

⑫ · ⑬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⑭ -----
-----.

1. ~ 2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운영

27. (생략)

⑭ (생략)

<신설>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생략)

27. (현행과 같음)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⑯ 지하안전팀장-----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3.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지반침하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8.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⑫ 삭 제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신 설>

12. ~ 16. (생 략)

⑭ ~ ⑳ (생 략)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생 략)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

⑬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관련 정책-----

11의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 16. (현행과 같음)

⑭ ~ ⑳ (현행과 같음)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

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
국) ①·② (생략)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략)

<신 설>

<신 설>

24.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21.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22.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⑤ (생 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생 략)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의3.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4. (현행과 같음)

④ -----
-----.

1.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조종사 및 관제사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운영 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16. <u>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17.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7. <u>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u> - ----- -----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항공정비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생략)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④ -----

분장한다.

1. ~ 56. (생략)

57.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
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
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
항

58.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
에 관한 사항

59. · 60. (생략)

⑤ · ⑥ (생략)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② (생략)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다.

제60조(도시정비기획단) ① 도시
정비기획단에 도시정비기획과
를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 ·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

-----.

1. ~ 56. (현행과 같음)

57.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8.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

59. · 60.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

----- 6급 1
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
명(5급 -----

--.

<삭제>

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5.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

항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
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12.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관련 현안 대응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③ 도시정비기획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신 설>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①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주택공
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추진본부에 주택공
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
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주택정비정
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 및 신
도시정비지원과를 두되,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③ 주택공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장·단기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의 유형·지역별 입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공공주택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표준건축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택공급 관련 연구·개발

11. 주택공급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2. 주택공급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택지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공공택지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공택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발굴
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구지정 전까지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10.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법」 및 「공유
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
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
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지구
에 관한 사항

⑤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지구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또
는 해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6.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8.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1. 공공주택 하자에 관한 사항

⑥ 도심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5.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3.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착·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⑦ 도심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용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시 이차보전 지원 제도에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9.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의 관리

10.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정비사업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3.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 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및 도심 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발전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
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공공정비사업의 운영 및 활
성화 지원
10. 공공정비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
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
화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
한 제도의 연구·발전
15. 역세권 등 도심 내 정비사업
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16. 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8. 조합점검·조합임원 교육 등 조합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신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및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

⑩ 신도시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

제61조(한시정원) 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
 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
 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
 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
 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
 무관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1명(철도경찰주사·행정주
 사·통계주사·공업주사·환경
 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
 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
대주택의 재건축에 관한 사항

⑪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한시정원) ① -----

 ----- 2028년 2월 29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20</u>	• <u>1,029</u>	+9
일반직 계	• • <u>1,010</u>	• • <u>1,019</u>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59</u>	• • <u>60</u>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16</u>	• • <u>18</u>	+2
• •	•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행정주사 · ·	<u>17</u> · · <u>90</u> · ·	<u>21</u> · · <u>91</u> · ·	+4 +1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	<u>11</u> · ·	<u>12</u> · ·	+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25</u>	• <u>1,034</u>	+9
일반직 계	• • <u>1,015</u>	• • <u>1,024</u>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59</u>	• • <u>60</u>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u>21</u>	• • <u>23</u>	+2
• •	•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행정주사 · ·	<u>18</u> · · <u>79</u> · ·	<u>22</u> · · <u>80</u> · ·	+4 +1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	<u>12</u> · ·	<u>13</u> · ·	+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33</u>	<u>1,342</u>	+9
일반직 계	<u>1,333</u>	<u>1,342</u>	+9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0</u>	<u>18</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4</u>	<u>6</u>	+2
·	·	·	
·	·	·	
행정주사	<u>35</u>	<u>40</u>	+5
·	·	·	
·	·	·	
<u>시설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u>	<u><신 설></u>	<u>4</u>	+4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33</u>	<u>1,342</u>	+9
일반직 계	<u>1,333</u>	<u>1,342</u>	+9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0</u>	<u>18</u>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5</u>	<u>7</u>	+2
·	·	·	
·	·	·	
행정주사	<u>35</u>	<u>40</u>	+5
·	·	·	
·	·	·	
<u>시설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u>	<u><신 설></u>	<u>4</u>	+4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과학기술서기관	<u>2</u>	<u>4</u>	+2
·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u>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u>2</u>	<u>1</u>	-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과학기술서기관	<u>2</u>	<u>4</u>	+2
·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u> <u>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u>2</u>	<u>1</u>	-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1. 제6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	· <u>1. 제61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6</u> <u>년 2월 28</u> <u>일)</u> · ·	· <u>1. 제61조</u> <u>제1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8년 2</u> <u>월 29일)</u> · ·	